



#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2015-1085 신문윤리강령 위반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주문**

강원도민일보 2015년 3월 18일자 5면 「진술 번복·DNA 제출 … 범정은 뜨거웠다/장애 친딸 성폭행 임신시킨 혐의 재판/피고 일부 부인에 감정자료 제출 공방」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강원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범정은 순간 술렁거렸다.

17일 오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된 친부와 친딸의 첫 공판.

정신연령 5세 수준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준간간)로 구속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한 50대 A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에 “(성폭행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검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의존적 성향이 강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날은 진술을 바꿨다. A씨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성폭행 관련)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A씨와 피해자 B씨 태아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한 공무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춘천 지역 산골마을에서 변변한 벌이 없이 친딸과 단둘이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딸을 임신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A씨가 자녀 출생 보조금 수령 문의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 상담하던 중 장애인 딸의 부친이 누구인지에 대한 A씨의 답변에 수상함을 느낀 신고가 출발점이 됐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후 딸 B씨는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A씨는 지난 2월 4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B씨는 오는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사회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지적장애 상태인 20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 상황을 보도했다. 특히 법정 내부 모습을 그린 가로 3단 크기의 큼직한 칼라 삽화를 곁들여 기사가 더욱 돋보이도록 편집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춘천 지역 산골에서 정신 연령 5세 수준인 딸 B씨와 단둘이 살면서 성폭행을 해 지난 해 8월 임신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성폭행과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A씨와 피해자 B씨 태아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기사는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진술 번복·DNA 제출 … 범정은 뜨거웠다」라고 달았다. 하지만 DNA는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일찍이 제출한 것이고, 범정이 뜨거웠는지 여부는 기사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 일부 부인에 감정자료 제출 공방」이라는 작은 제목과 관련한 내용도 기사 본문에는 없다.

따라서 위 제목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자극적으로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기사는 또 피고인과 친딸인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재판 자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적어도 방청객들에게는 이들의 신분

이 거의 공개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강원도민일보는 피해 지역이 『춘천 지역 산골 마을』이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친딸』이라고 전하면서 피해 경위와 상황, 피해자가 5월에 출산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2차 공판 기일이 4월 7일이라는 것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5월에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위 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으로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원도민일보는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와 제목은 신문의 품위와 공신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살보도의 신중

2015-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 주문

대구일보 2015년 3월 2일자 5면 「자폐증 아이와 동반자살 시도/어머니 숨지고 아들은 중태」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27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시 동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이모(37·여) 씨가 자신의 아들 장모(3)군을 안고 1층으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폐증을 앓던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남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장군은 목숨은 건졌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한달 전 아들의 자폐증 진단을 받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는 위 기사에서 30대 주부가 자폐증 환자인 3살짜리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자신은 숨지고 아들은 중태에 빠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문과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3살짜리 자폐아는 본인의 뜻에 상관없이 어머니에게 안겨 1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봐야 옳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146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 주문

光州日報 2015년 5월 5일자 7면 「어느 젊은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광주 광산구 20대, “시한부 아내 차마 못 봐” 아파트 투신/급성폐혈증 앓던 부인도 2시간 만에 숨져 주위 애절함 더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光州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일 밤 1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모(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오전 전 씨는 자신의 아내(33)와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나란히 안치됐다. 부인의 갑작스런 시한부 판정을 비관한 20대 남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21층에서 투신을 했고, 급성폐혈증으로 투병을 하던 전 씨의 아내도 두 시간 뒤 숨을 거둔 것이다.

서울이 고향인 전 씨는 가족과 떨어져 광주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누나와 동생’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지난 2013년 1년간의 열애 끝에 ‘백년 가약’을 맺었다.

외동 아들이었던 그에게 딱딱한 성격의 아내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각별한 애정과 믿음으로 아내를 대했던 그는 소문난 애처가였다. 어머니가 없는 아내를 위해 늘 처가를 먼저 챙겼고 이웃들이 “요즘 젊은 부부답지 않게 금슬이 좋았다”고 안타까워 할 정도로 흔한 말다툼 한번 없었다.

하지만 건강했던 아내가 지난달말 급성폐혈증으로 입원을 하면서 전 씨의 상심이 컸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병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지만 그는 투신 전날 밤 11시께 아내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 의사에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아내의 마지막을 통보받은 전 씨는 장인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홀로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가 발길을 한 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였다. 3일 밤 11시40분께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이 살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그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거실 벽지에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흔적도 남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거실 한쪽 벽지가 손톱에 의해 뜯겨져 있던 것으로 미뤄 아내의 생명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홀로 있던 30분간 괴로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씨가) 아내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홀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남편의 안타까운 선택이었다. 같은 날 운명을 달리한 두 부부는 현재 같은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마치는 대로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나란히 안치될 예정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급성패혈증을 앓던 아내(33)가 곧 운명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연하의 남편(29)이 아내가 숨지기 2시간 쯤 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룬 사회면 머리기사다.

기사는 그런데 『그가 발길을 한 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아파트였다』, 『거실 벽지에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흔적도 남았다』 등 자살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고도 감상적으로 소개하면서, 특히 『홀로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남편의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남편의 자살을 미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 주문

부산일보 2015년 5월 14일자 3면 「몰락했지만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건 ‘자존심’」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5월 15일자 2면 「부산 일가족 동반자살/사회안전망 빈틈 컸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부산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센텀시티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 가정은 왜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을까? 계속되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고 마는 어느 서민층의 케이스와 달리 중산층이 가족 간의 불화도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이처럼 막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3일 아버지와 공모한 아들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운대 일가족 참극’은 우리 사회 몰락하는 중산층의 일단면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1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가장이 가게 파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인과 딸을 목졸라 살해한 ‘서초 세 모녀 살인 사건’과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해 복지 사각에서 신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계 지점에 있다.

#### ■ 남부럽지 않던 중산층의 이면

경찰 수사 결과 송모(37) 씨 일가족 동반자살의 동기는 일단 경제적 이유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가족은 부산의 최고 부촌인 센텀시티 한복판에 145㎡(44평 형) 크기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살았다. 광안대교와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특급 조망을 갖춘 ‘로얄층’이다.

송 씨 일가족은 지난 2010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임대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구해 5명이 함께 생활해왔다.

해운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했던 아버지 송 씨는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재력을 쌓았다. 하지만 아버지 송 씨가 몇년 전 사고로 장애를 입어 일을 그만두면서 송 씨 가족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송 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형과 함

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난을 겪다 결국 3년 전 사업을 접고 말았다. 이 와중에 누나와 매형도 갈라서게 됐다.

송 씨 가족은 장성한 아들과 딸, 손자까지 3대가 함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도 이후 변변한 수입원은 없었다.

근근히 버티오던 송 씨 가족은 지난해 2월부터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처지까지 이르렀다.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추가로 625만 원을 밀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체납된 관리비도 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의 누나가 지난해 말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집주인은 송 씨 가족에게 오는 15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송 씨 부자는 예정된 퇴거 일을 사흘 앞둔 12일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 ■ 상대적 빈곤감이 극단의 선택으로 ...

송 씨 가족 사건은 지금까지 누려온 중산층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동반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송 씨의 누나(41)는 학비와 레슨비가 많이 들어 웬만한 가정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음대를 졸업했다. 송 씨 가족은 가세가 기운 이후에도 손자 교육이나 생활비 씬씀이를 줄이지 않는 등 ‘해운대 중산층’의 면모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역시 최근까지 아버지 소유의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송 씨의 또다른 친구는 “송 씨가 최근 몇년 간 생활고를 토로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곤 했다”며 “보다 못한 지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떨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송 씨 일가족 사건은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미혼 남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 이혼 후 자식 부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 여성들의 자립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삶을 더 이상 유지 못한다는데서 박탈감에 시달리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등장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 송 씨는 유서에서 “자식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 “남한테 말도 못하고 괴로웠다”며 아들 송 씨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재력과 지위, 학벌로 개인을 평가하는 한국적 문화에서 한때 중산층이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송 씨 가족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짐작케 한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김종오 교수는 “일반적 상식 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 여유 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상대적 빈곤감이 최악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아 …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에 가족들과 함께 간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송모(38)씨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의 첫 구절이다. 송 씨의 집 거실에선 아버지(67)와 어머니(64), 누나(41), 조카(8)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 어른 시신의 발 아래에는 커피와 과일, 성경책 등이 놓여 있고, 조카 시신 아래 쪽에는 빨대가 꽂힌 요구르트와 과자, 음료수가 놓여있었다. 송 씨가 투신 전 숨진 가족들을 위해 추모의식을 한 듯 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은 주로 빈곤층에서 일어나지만 이 사건은 부산 최고의 부촌(富村)인 센텀시티 한 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들이 살던 집은 44평으로 해운대 앞바다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이다. 2010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인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도 이들은 준중형 외제차를 비롯해 3대를 등록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버지 송 씨는 한 해운회사의 중역을 지냈고, 누나는 성악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크루즈선의 요리사로 일하던 아들 송 씨는 이 아파트로 입주

하던 즈음 매형과 비철금속을 매입해 동남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사업은 실패했고, 매형과 누나는 이혼했다. 아버지 송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누나가 성악 강사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이 다섯 식구의 유일한 수입이었다. 송 씨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에게 피해를 주게 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혔고, 아버지 송 씨 역시 유서에 “누님께 진 빚, 갚지 못하고 떠납니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1년6개월간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 2,000만원을 제하고도 625만원이 밀려있었다. 결국 이달 15일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 이틀 전인 13일 온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가정은 사업 실패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했지만 정작 사회적 시스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중산층 가정은 저소득 가정보다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가장의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재송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가족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했어도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의 사망이나 가출 등 법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돼야 하는데, 월세가 밀렸다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 가정은 평생 중산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복지 제도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복지 지원 대상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추락한 중산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복지 공무원들의 재량을 인정하는 지원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실패 후 자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현제도의 공무원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를 제공해야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고, 급속하게 빈곤층으로 떨어진 데 대한 심리적 타격 또한 커 심리 상담도 병행해야 하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부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 모두 해운대의 부촌에 살던 중산층 가정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몰락 과정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다각도로 보도했다.

부산일보 기사는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단정적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모(38) 씨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가족 4명은 송 씨의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내용과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송 씨가 가족들 목숨을 끊은 뒤 투신자살한 것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본문에서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로 기술하면서도 큰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넣었다.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65 신문윤리강령 위반

### 한겨레 발행인 정영무

#### 주문

한겨레 2015년 9월 7일자 10면 「잘나갔던 최연소 임원/비극 부른 ‘사내 따돌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겉으로는 더없이 ‘잘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 그의 회사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끝없는 실적 압박과 회사 내 파벌싸움에서 오는 시기·질투에 괴로워했지만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부인과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회사 내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한, 성공했던 46살 가장은 결국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아무개씨는 1989년 카이스트 졸업과 동시에 엘지그룹 계열사에 입사했다. 계열사 몇 곳을 거쳐 엘지씨엔에스(LG CNS)에서 일하던 2004년 그는 또다른 계열사인 엘지파워콤 고위 임원의 제안을 받고 회사를 옮겼다. 2010년 1월 엘지텔레콤·엘지데이콤·엘지파워콤 3사가 합쳐져 엘지유플러스(LGU+)가 되면서, 그는 평균보다 4~5년 이른 44살의 나이에 회사 내 최연소 상무가 됐다.

통신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방송 분야인 인터넷텔레비전(IPTV) 사업부장을 맡게 되면서 시련을 맞게 됐다.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경쟁사인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에 밀리자 사업 부진의 화살은 그에게 돌아왔다. 합병된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파워콤 출신인 그는 입지가 좁았고, ‘회사 내 주류’인 텔레콤 출신이 직속 상사인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런 현상은 더 강화됐다. 새 본부장은 이 씨를 배제한 채 부하 팀장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다.

견제에는 시기와 질투도 따랐다. 2012년 4월 그가 국내 인터넷텔레비전 가입자 500만명 달성의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게 되자, 새 본부장은 공개회의에서 회사 고위층의 말이라며 “상무 직급인 이 씨가 대표이사에 앞서 훈장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 훈장을 취소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 뒤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든 그는 팀장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그동안 회사와 집만 다니고 취미나 다른 일이 20년간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자신을 파워콤으로 영입했던 전 파워콤 고위 임원에게는 ‘새 본부장 외에도 다른 상사 및 동료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새 본부장 취임 뒤 등을 돌리는 것 같으며 주변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평소와 달리 아내에게 ‘힘들다. 안아달라’고도 했던 그는 2012년 8월10일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른 아침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이 씨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4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회사 내 최연소 상무로 승진한 40대가 자살에 이르게 된 배경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 「잘나갔던 최연소 임원/비극 부른 ‘사내 따돌림’」으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카이스트출신 엘지유플러스 상무/사내 시기질투·실적압박 시달리다/“군중 속 고독” 메일보낸뒤 목숨 끊어/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 손 들어줘」로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최연소 임원인 엘지유플러스 상무가 ‘사내 따돌림’으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본문엔 ‘사내 따돌림’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 비록 기사는 새 본부장과의 불편한 관계, 다른 상사와 동료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임원인 그가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또한 기사본문에 소개된 법원판결 내용도 ‘사내 따돌림’과는 거리가 있다. 기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씨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위 제목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97 신문윤리강령 위반

###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 주문

세계일보 2015년 10월 9일자 9면 「삶에 짓눌린 가장 가족과 짐 나눠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가 제일 커야 하나”  
- 거대한 권력은 권음

**삶에 질들린 가장  
가족과 짐 나눠라**

5월 15일 18:29

미국 가톨릭 대학 교수인 워너 로버트 교수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생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어릴 때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없으면 삶은 그다지 재미없고, 때로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살해범은 에드워드 리-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

1984년 10월 26일 새벽 1시 15분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은 27일 판례가 나왔다. 살해범 에드워드 리(Edward Lee)는 살해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리는 살해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리는 살해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살해범인 에드워드 리. 사진은 수사당국에서 제공한 것이다.



포스코 협력업체 추가 압세- 수사 막판 속도

포스코가 협력업체를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만복 “대부분 공개된 사실- 허락 불필요”**

김만복은 “대부분 공개된 사실- 허락 불필요”라고 말했다. 김만복은 “대부분 공개된 사실- 허락 불필요”라고 말했다. 김만복은 “대부분 공개된 사실- 허락 불필요”라고 말했다.



김만복. 사진은 김만복 대표의 제공한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50대 가정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생활고 등에 대한 가정의 인식이 바뀌어야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위 기사는 왜곡된 가장 중심의 문화를 지적하며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아내의 딸기 암 판정, 빚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 등을 소개하며, “도저히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다고 판

단했는지 그는 끝내 아내와 딸을 먼저 살해하고”라고 기술하는 등 50대의 자살 원인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자살도구인 올가미를 이미지 컷으로 사용했다. 광고 없는 면에 올가미를 길게 늘어뜨려 독자들로 하여금 끔찍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다.

올가미 자체만으로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외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컷은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1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 주문

서울신문 2015년 12월 14일자 4면 「기저귀 차고 누워 지내다 … 중일 굶은 노인은 제조제를 마셨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검1』

“안방에서 죽었어. 그라목손(㉔) 먹고, 여서 꼬꾸라졌는디 … 거긴 보기도 싫어.”

2개뿐인 앞니에 박유순(69·가명) 할머니의 발음은 썼지만 악몽 같았던 그날 하루의 기억은 방금 전 일처럼 생생하다. 시부모 봉양으로 시작해 남편과 50년 이상을 함께한 흙담집(㉑)에서 남편 김희준(81·가명) 씨는 지난 4월 중순 제초제(㉒)를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달이 난 건 7개월 전이다.

그날 아침 달라진 남편의 행동은 할머니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남의 농사 일을 돕다 갈비뼈 골절(㉓)로 한 달여간 누워만 있던 할아버지(㉔)는 작심한 듯 성질을 부렸다. 밭도 끝도 없었다. 머리맡에 놓인 과도를 들고는 “문 닫고 나가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 아저씨는 원래 나한테 군소리 안 하고 다정하디 그날은 이상했어. 과일 깎아 먹으려고 놔둔 과도를 들고 눈에 불을 쏘지르면서 갑자기 나한테 문 닫고 나가라고 하는 거여. 겁이 나 문 닫고 나와 마당서 나물 두 바가지를 씻고 문 열어 보니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더라구.”

빗속을 뚫고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는 구급차가 마치 경운기처럼 더디게 느껴졌다. 청주 병원을 거쳐 다시 천안의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불행이 다가온 건 지난 4월이다. 할아버지가 집 뒤 대나무 밭에 갔다 넘어져 갈비뼈 2대가 나갔다. 병원에 갔지만 계속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퇴원하고 며칠 후에 남의 삼발 일을 도와준다면 경운기를 몰고 언덕배기를 오르는데 경운기가 넘어졌다. 다시 갈비뼈 3대가 나갔다. 의사는 “뼈가 다 붙은 뒤 퇴원하라”고 권했지만 그럴 순 없었다. 보름치 입원비로 내야 하는 90만원도 이미 노 부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기 때문이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끼니는 물론 화장실 가는 일조차 혼자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할머니는 가끔 나오는 남의 밭일이나 공공근로를 하러갈 수밖에 없었다. 돈이 될 수였다. 주변에서는 병간호하는 사람을 붙이든 당분간 요양원에 보내든 하라고 권했지만, 매달 40만원이 드는 게 문제였다. 그렇게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일을 나갔다.

“먹고살려면 계속 일을 나가야 하니까. 찌개 끓여놓고 조기새끼 가서 다 발라 놓고 남의 밭에 쑥 뜯으러 갔어. 그리고는 일 다하고 집에 갔더니 온종일 우리 아저씨가 밥(㉔)도 못 먹고 누워 있는 거여. 지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밥도 못 먹고 있더라구. 그렇게 밥 좋아하는 양반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할아버지 밥 떠먹여 주면서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리고 하루 있다가 그렇게 됐어.”

지긋지긋한 가난은 대물림을 받았다. 그나마 젊을 때는 몸뚱이가 재산이었다. 머슴 일부터 남의 농사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다들 가난한 때라는 위안을 하며 평생 농사일을 했지만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때는 희망도 있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쌀 7가마니 정도가 나오는 작은 땅도 생겼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 몇 년 전 아들의 빚을 갚느라 전답을 모두 날렸다. 할아버지는 몇 년간 ‘그 땅은 쳐다보기도 싫다’며 애먼 산을 돌아 빙 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 3남매를 키워 출가시킨 것만도 대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년의 삶은 더 곤궁했다. 몇십만원이 전부인 통장 잔고는 늘 한 달을 못 버텼다. 할아버지가 팔순이 넘으면서 바깥 일은 거의 할머니의 몫이었다. 남의 밭에 일을 나가거나 공공근로를 해서 버는 돈은 20만~30만원 정도, 노령연금 등을 합쳐도 손에 쥐는 돈은 늘 50만~60만원(㉕)을 넘지 않았다. 땅 빌리는 데 드는 돈에 전기요금, 난방비, 약값, 식비, 부조금 등을 내면 남는 돈 이라곤 몇만원 정도였다.

“한 2년 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아파서 드러누우면 스스로 죽어야지, 남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 치료비(㉖) 때문에 산 사람도 못 살게 할 순 없잖아’라고 …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타박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나 봐.”

어려서부터 가난한 삶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점잖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시골 투전판에 낀다든지 바람을 피우는 일도, 그 흔한 주사 한번 부리는 일이 없었다. 덕분에 살아생전 집안에서는 큰소리 한번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유품을 확인하다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수십년을 써 다 낡고 녹녹해진 남편의 지갑 속에 3만원이 찰싹 들러붙어 좀체 나올 줄을 몰랐다. 시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등에선 몇 년을 모았는지조차 종잡을 수 없는 꼬깃꼬깃한 지폐 109만원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뒤늦게 발견한 할아버지의 쌈짓돈은 농협에 빌린 200만원을 스스로 갚아 보려는 마음인 듯했다.

가난한 부모는 3남매(㉔) 중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못 배우고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 남들처럼 좋은 것 못 먹이고 부족하게 가르친 것이 항상 미안했다. “생활비 대주는 애들은 없지만, 명절 때는 와요. 자기들 애들 키우고 밥 먹고 살려면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있나. 자기 쓸 돈도 없을 거야.”

할머니는 못내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죽으려고 했다. 하도 이불을 걷어차서 3~4개월 전부터 이불을 따로따로 덮었거든. 근데 언젠가 ‘임자, 내 곁에 와서 자’(㉕) 이러는 거야. 그래서 ‘더운데 뭘 같이 자’라며 핵 돌아서서 잤지. 그리고는 사흘 뒤에 그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3일장도 못 치렀어. 며칠 지나지도 않아 공공근로 시작했지. 눈물도 안 말랐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그래도 나가야지. 일 안 하면 돈 못 받잖우.”

## [주검2]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한번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적은 없었죠.”

이명자(44·여·가명) 씨는 아버지 이영재(가명) 씨의 정확한 기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깝다. 매번 외워 보려 하지만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다. 부친의 죽음은 그만큼 잊고 싶은 사건이었다. 아버지는 일흔일곱 되던 2011년 3월(㉖) 고향인 전남 ××군 시골집에서 숨졌다. 사인은 병사(病死). 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자살이라고 여긴다. 마흔살 때 한번 자살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었고 사촌형(㉗)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족사에 아픔도 겪었던 아버지였다. 딸 이 씨는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그렇게 돌아가

시면 남은 자식들이 평생 손가락질 당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병사로 위장하려고 굶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씨가 남긴 전 재산은 현금 200만원. 갚지 못한 농협 대출금 수백만원을 생각하면 실제 유산은 빚밖에 없다. 가난은 촌로의 게으름 탓이었을까. 하지만 딸이 씨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부지런한 소작농(㉘)'이었다. 거둬들인 농작물의 절반은 땅주인에게 주고 남은 것의 절반은 자녀 5명에게 골고루 나눠 줬다. 그리고 남은 곡식을 팔아 푼돈을 벌었고 알뜰히 모았다. 선천성 난치병을 앓던 막내아들(㉙)이 있었기에 '아이가 먹고살 돈은 남기고 가야 한다'는 부채 의식에 더 악착같이 일했고, 또 모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전 재산 1800만원을 친척에게 사기당해 모두 잃고 막내는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면서 허사가 됐다.

아버지 이 씨의 황혼녘에 남은 것이라고는 '자식을 앞세웠다'는 허망함, 그리고 가난뿐이었다. 노인성 우울증(㉚)이 찾아왔고 76세 되던 해에는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늙은 부정(父情)은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아버지 기대기에는 딸들의 삶이 이미 껍퍽했다. 빈곤의 대물림(㉛)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사는 고향집에서 외롭게 앓았다. 뒤늦게 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알아챈 딸은 지역 대학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어차피 돌아가실 분(㉜)인데 뭐하러 데려왔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 어머니의 애타는 부탁과 만류에도 곡기를 끊었고 굶은 지 15일 만에 숨을 거뒀다.

빈곤한 노년은 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내색할 수 없다. 가족들은 늙은 부모의 자살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은 오히려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드물며, 모든 연령대 중 자살을 가장 치밀하게 준비하는 세대"라고 말한다. 심리부검에 응했던 딸 이 씨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멍멍하게 말했다. "유품 중 아버지 수첩이 있었는데 가족 생일과 제사만 적혀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을 견이(㉝)를 해 보내주실 만큼 가족만 위하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사셨는데 도대체 왜 ...."』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기획으로 심리부검을 통해 본 노인 자살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위 기사는 기획 ‘누가 김노인을 죽였는가’의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1개면을 할애해 보도됐다. 기사는 스스로 세상을 버린 두 노인에 대한 심리 부검을 통해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심리를 추적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들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요량으로 자살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라목손 먹고 꼬꾸라졌는디 …”, “제초제를 마셔 쓰러져 있더라구” “한 2년 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아파서 드러누우면 스스로 죽어야지, 남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 치료비 ⑥ 때문에 산 사람도 못 살게 할 순 없잖아’라고 …”라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처럼 자살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자살 방법,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 기사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1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 주문

헤럴드경제 1월 27일자 11면 「마포대교만 ‘자살명소’?/췌한강교량 투신 증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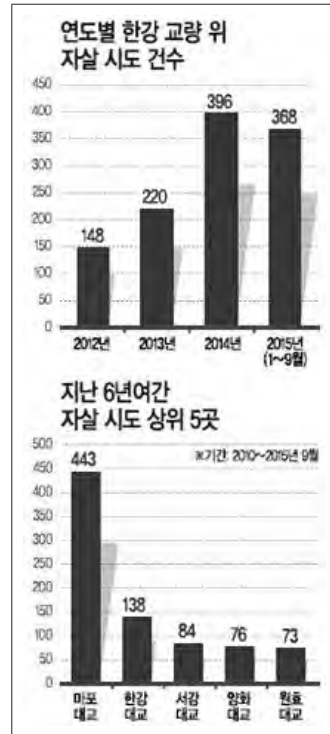
『해가 갈수록 한강 교량에 올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교량 위에서 발생하는 자살 시도 및 사망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입수한 ‘2010~2015년(9월말 기준) 한강 교량 위 자살 시도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자살 방지 대책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 횟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193명 196명이었던 한강 교량 위 자살시도자의 수는 2012년 148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3년 220명, 2014년 39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까지 자살 시도자의 수는 한달 평균 40.9명 수준인 368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4분기가 지난 연말 기준 통계치에서는 자살 시도자 수가 490여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자살 시도 및 구조는 여의도 부근 교량들에 집중해 발생했다.

지난 6년여간(2010년~2015년 9월) 자살 시도 상위 5곳은 마포대교(443건), 한강대교(138건), 서강대교(84건), 양화대교(76건), 원효대교(73건) 순이었다. 특히 이들 교량의 2010년 대비 2014년 자살 시도 증가율은 최근 ‘자살 명소화’ 논란이 일고 있는 마포대교가 800%로 높았다. 하지만, 한강대교(293.8%), 서강대교(104.5%), 양화대교(200%), 원효대교(123.1%)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살자 구조 등에 효율성을 더함으로써 자살 시도자의 사망사고 비율을 크게 줄여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며 “자살 시도자를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CCTV 등의 시설물을 더 강화해 나갈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살 시도자의 사망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 87명이던 사망자수는 2011년 95명, 2012년 65명, 2013년 11명, 2014년 11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한강 교량을 오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구조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한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진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제시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교량과 자살 시도자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끊는 것이다.

홍 센터장은 “지난 2011년 제초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한 자살 시도가 60% 이상 감소하는 등 자살 수단과 자살 기도자 간의 연결 고리를 끊어주려는 노력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뒀다”며 “현재 한강 교량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2~3배 높이는 것만으로도 자살 시도자 수를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방법 이외에도 한강 교량 전체를 각자 특성에 맞춰 테마화해 언제나 주목 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교량을 자살 이미지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강 교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통계수치를 분석한 것이다. 기사는 자살 시도 상위 5곳의 교량과 자살 건수에 대해 순위를 매겨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또 “2014년 자살시도 증가율은 최근 ‘자살 명소화’ 논란이 있는 마포대교가 800%로 높았다”고 보도했고, 편집자도 ‘자살시도 상위 5곳’의 순위표를 게재하고 큰 제목을 「마포대교만 ‘자

살명소?’라고 달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강교량, 특히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널리 알려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자살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밝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자살 보도에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면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장소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105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2. 朝鮮日報 발행인 흥 준 호

### 주문

세계일보 2016년 2월 12일자 8면 「생명의 다리’ 위로가 독이 되다 ... 마포대교의 눈물」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15일자 A10면 「세 살배기 한강물에 놔두고 .../동반자살 조선족 혼자 빠져나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세계일보와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밥은 먹었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저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런 식으로 정감 나는 문구를 던지시 내밀어주고는

했어요. 누구든 절대 무심히 대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캄캄한 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겐 특별히 불빛을 반짝이며 “속상해 하지마”, “많이 힘들었지”라고 속삭였어요. 오지랴도 넓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혹시나 ‘세상 참 살기 싫다’고 저를 찾아 온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마포대교’인데 2012년 9월부터 양쪽 난간 위에 ‘따스한 글귀’들을 올려놨어요.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저는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된 문구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됐어요. 이런 식의 자살예방 캠페인은 세계 최초라네요. 그래서인지 2013년 해외 우수 광고제에서 상을 37개나 받았어요. 시도 자체가 새로운 데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호평과 함께요.



11일 한 시민이 다리 양 난간에 ‘속상해 하지마’ 등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문구가 적힌 서울 마포대교 위를 걸어 가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더군요.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던 2011년에는 한강으로 뛰어든 분이 11명(사망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5명(“ 6명)으로 늘더니 2013년 93명(“ 5명), 2014년 184명(“ 5명)으로 폭증했어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서울의 전체 한강 다리(27개)에서 2014년 한 해 투신(시도)한 사람이 396명(사망 11명)인데 절반(46.5%) 가까이가 투신장소로 저

를 택한 셈입니다.

이렇게 삶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유독 저를 찾아 오니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따뜻한 말과 글로 위로하려 애쓴 저의 노력도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죽하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 글판의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는 시구가 제게는 두렵더라고요. 이틀에 한 명꼴로 제 앞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지는데 왜 안 그랬겠어요. 경찰에 물어보니 ‘N포 세대’로 불리는 20대 투신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원인을 놓고 ‘생명의 다리’라는 과도한 홍보가 역효과를 불렀다는 진단도 있었어요.

연세대 이수정 교수(심리학)는 “심리학에 특정 단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되레 더 많이 떠올리는 백곰효과(White Bear Effect)라는 것이 있다”며 “자살을 하지 말라면서 다리를 꾸며 놓으니 사고를 부추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자 서울시와 삼성생명도 손을 들어버리더라고요. 연간 1억5000만원 수준인 마포대교 자살 예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거죠. 결국 지난해 12월부터는 응원 문구 조명도 꺼졌어요. 서울시는 자살 방지대책을 수정해 이르면 5월 이후 제 난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애초 난간을 높이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병행했어야 하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키운 감이 있다”(국립중앙의료원 김현정 전문의)는 겁니다. 물론 난간을 높인다고 끝난 게 아닐 테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든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을 상담 창구가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의 조언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홍진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마포대교의 구조물을 긍정적인 전시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제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괜찮은 아이디어를 귀띔해줬습니다. 가령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다리’ 등으로 콘셉트를 다시 잡아 남녀, 애완동물,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다리와 결합해보라는 겁니다.

카~ ‘사랑대교’라. 마포대교에 가는 그 누구든 사랑이 싹트고 꽃을 피운다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그런 다리로 거듭나는 게 새해 소망입니다.』

(朝鮮日報)= 『서울 광진경찰서는 세 살배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어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빠져나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여성 김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13일 오전 1시쯤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품에 안고 1m 정도 깊이 한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뒤 김 씨는 아이를 물속에 두고 혼자만 물 밖으로 나와 올림픽대로 쪽으로 걸어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아이를 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종종 보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추위를 느껴 밖으로 나왔다”며 “나는 올림픽대로 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가방에선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 중국어로 쓴 A4 2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김 씨는 3년 전 조선족 남편과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마포대교에서의 자살예방 캠페인이 오히려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알리는 계기가 돼 투신자가 폭증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함께한 자살예방 공익광고가 독이 됐다는 사실, 이로 인해 캠페인이 중단됐다는 내용과 난간 보강 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마포대교를 비롯해 한강 주요 교량 6곳의 자살건수와 사망자수를 상세히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교량별 투신사고 발생 현황표와 투신장소인 마포대교 사진을 실었다. 큰 제목을 「‘생명의 다리’ 위로가 독이 되다 … 마포대교의 눈물」로 뽑고 작은 제목을 「‘자살대교’ 오명/N포 세대’ 20대 자살시도 최다」 등으로 달았다.

이러한 보도 내용과 제목은 한강교량, 특히 마포대교를 자살 장소로 널리 알

려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자살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밝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자살 보도에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면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장소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2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을 안고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빠져나와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세 살배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어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세 살배기 한강물에 놔두고 …/동반자살 조선족 혼자 빠져나와」로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동반자살’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은 어머니에 의해 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두 신문의 위 기사들은 흥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1060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 주문

헤럴드경제 2016년 2월 25일자 1면 「피로사회 … 노인들 ‘셀프 고려장’」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에서는 90대 노인이 난간 위를 올랐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 끝에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93) 할아버지는 그동안 고혈압 등을 오래 앓으며 가족들에게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마음이 약해져 가족들에게 더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3면

2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0만명 당 120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10만명 당 18명)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빈곤, 신체·정신적 장애와 질병, 소외와 고독”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다보니 타인과 비교를 통한 자괴감도 더 커지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출이나 노숙 등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노년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노숙자 잡지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모(65)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과 탑골공원을 배회하는 노숙자 신세였다. 황씨는 지난 2011년 아들 내외가 운영하던 고깃집이 폐업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짐이 되기 싫다며 가출을 선택했다.

황씨는 “일을 시작한 지 20여일만에 50만원 가량의 돈을 모은 지금도 아들에게 전화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와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봤자 짐만 될 뿐이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기방임’ 학대 노인들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기방임 학대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주연 노인복지연구소 연구원은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적응이 빠르지 않아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보니 자기방임 등의 형태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며 “자기방임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노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며,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맞춰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인식을 심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은 전통적인 틀에 맞춰 그저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자살과 가출을 선택하는 노인문제를 다룬 1면 머리기사다. 그 요지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 자신을 방치, 학대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자살을 시도한 90대 노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자살 수단과 장소를 알리고 있고, 자살 동기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편집자는 「피로사회 ... 노인들 ‘셀프 고려장’」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우리 사회를 파괴적 자학과 자책으로 이어지는 피로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이어지는 노인들의 자살을 ‘셀프 고려장’이라는 신조어로 규정해 독자들에게 알렸다.

위 제목은 비록 노인들문제와 관련한 사회병리 현상을 설명하려 한 취지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사회 통념과는 거리가 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다. 차칭 ‘셀프 고려장’이라는 신조어는 보기에 따라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